

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10일
허가신청자 (신고자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복구비 예치 명세	이번에 예치할 금액	원	
	기 예치총액	원	
	예치총액	원	
위치·면적			
신청사항	연장사유		
	연장기간		

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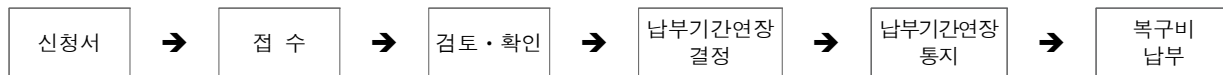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첨부서류	복구비 예치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제출기관

신청인